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997 발의연월일: 2023. 5. 15.

발 의 자:정경희·성일종·김상훈

박형수 · 김용판 · 조명희

서병수 • 박정하 • 한무경

이태규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.

피해학생의 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, 학교 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. 이는 최근 국무총리실 및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내용과도 부합함.

이에, 학교폭력의 원활한 자체해결을 위해 학교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담기구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·가해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의2제1항 본문 중 "아니하는"을 "아니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

에 따른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의 관

계 회복이 이루어진"으로 한다.

제13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.
- ④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학교의 장에게 피해학생·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교의 장 자체해결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학교의 장의 자체해결)	제13조의2(학교의 장의 자체해결)
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	①
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	
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	
원하지 <u>아니하는</u> 다음 각 호에	<u>아니하거나 제3항 또는</u>
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	제4항에 따른 관계회복 프로그
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	램을 통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
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	학생 간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
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	<u> 진</u>
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	
보고하여야 한다.	
	<b>.</b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가
	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관계
	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
	<u>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
	구가 학교의 장에게 피해학생

	•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관계
	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
	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특
	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
	<u>야 한다.</u>
③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